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도 참고자료	
		보도	2017. 2. 1.(수) 조간
담당부서	자본시장감독국	장준경 국장(3145-7580), 박봉호 팀장(3145-7616)	배포
			2017. 1. 31.(화)

제 목 : 금융꿀팁 200선 - ③① 유망기업 성공투자법(1): 크라우드펀딩편

-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하여
 - 매주 1~3가지씩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 동시에 2016.9.1일 개설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에도 게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른 한번째 금융꿀팁으로, “유망기업 성공투자법(1): 크라우드펀딩편”을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림

<별첨> 금융꿀팁 200선 - ③① 유망기업 성공투자법(1): 크라우드펀딩편

금융감독원은 작년에 이어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금융관행 개혁 포털' (<http://better-change.fss.or.kr>) 내 '국민 참여방'으로 제보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제 목	유망기업 성공투자법(1): 크라우드펀딩편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1) 500만원의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강속구(52세)씨는 재산 증식을 위해 이 돈으로 유망기업의 주식을 사기로 마음먹었음. 그런데 중 최근 신문에서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도입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 제도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투자절차나 위험성 등을 잘 몰라 망설이고 있음 ● (사례2) '16년 12월, 최성급(35세)씨는 지인의 말만 믿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벤처기업에 50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뒤늦게 해당 기업의 사업계획이 부실한 것을 알게 되자 성급하게 투자 결정을 내린 자신을 원망하였음 ● (사례3) '17년 1월, 이깜박(45세)씨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5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175만원(35% 세율 적용) 상당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였음
꿀팁	<p>☞ 크라우드펀딩 투자시에는 아래 5가지 준수사항을 꼭 실천하세요.</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p>< 크라우드펀딩 성공투자 5가지 준수사항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신의 투자성향에 적합한지 신중히 고려 ② 크라우드넷에서 투자한도 및 등록 중개업자 확인 ③ 투자대상 기업의 사업계획 등 엄정 평가 후 투자 결정 ④ 투자 후 사업진행 및 재무상황 수시 확인 ⑤ 벤처기업 등 투자자는 소득공제 신청 </div>

① 크라우드펀딩이 자신의 투자성향에 적합한지 신중히 고려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온라인 펀딩포털에서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이 창업기업인 만큼 투자자의 투자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환금성이 낮아 투자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투자한도, 1년간 매도제한, 최소 모집금액의 청약 미달시 발행취소 등의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경우에는 먼저 “크라우드넷^{*}”을 방문하여 제도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자신의 투자성향과 투자 목적에 적합한지 신중히 따져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운영하는 크라우드펀딩 전용 홈페이지

크라우드펀딩 주요 제도

구분	내용	
연간 투자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일반투자자<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당 한도: 200만원- 총 한도 : 5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소득요건 구비 투자자*<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당 한도: 500만원- 총 한도 : 1,000만원
최소 모집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청약금액이 최소 모집금액(모집 예정금액의 80%) 미달시 증권 발행 취소	
청약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투자자는 청약기간 말까지 청약 철회 가능	
증권 매도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증권<ul style="list-style-type: none">1년간 매도제한(다만, 전문투자자에 대한 매도 및 증권시장을 통한 매도 등은 가능)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합계액 1억원 이상인 자

② 크라우드넷에서 투자한도 및 등록 중개업자 여부 확인

크라우드넷에서는 본인의 투자한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별 또는 연간 한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투자 가능한 금액을 미리 확인해서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크라우드펀딩으로 가장하고 고수익을 홍보하면서 투자금을 유인하는 금융사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크라우드넷에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정식 중개업자를 확인하고, 해당 중개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여야 합니다.

※ 크라우드넷(<http://www.crowdnet.or.kr>) 안내

- (제도 소개자료) 정보센터 → 자료실 → 크라우드펀딩 소개자료
- (투자한도 조회) 한도조회 → 투자한도 조회
- (중개업자 조회) 펀딩 정보조회 → 중개업자 조회

③ 투자대상 기업의 사업계획 등을 엄정 평가 후 투자

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투자 대상을 찾을 때에는 투자기업(증권 발행기업)이 공시하는 증권의 발행조건, 재무상태 및 사업계획을 꼭 읽어보아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핵심자료로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보고 투자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업계획은 창업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사업계획을 평가할 때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쉽게 모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금번 자금 조달을 통해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시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면 투자기업에 직접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개업자 홈페이지에서 쉽게 문의하고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경쟁업체와 차별되는 역량과 기업이 직면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문의하고 답변을 확인하면 투자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업자 홈페이지에서 다른 투자자가 질문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사업계획을 함께 논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투자자와 함께 논의하면 혼자일 때보다 중요사항을 누락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발행인 공시내용 및 의견교환 장소

- **(공시내용)** 증권의 발행조건, 재무상태, 사업계획, 대주주 범죄이력 등
- **(공시장소)** 중개업자 홈페이지의 발행기업 게재사항
- **(의견교환)** 중개업자 홈페이지의 발행기업 의견교환 게시판

④ 투자 후에는 사업진행 및 재무상황을 수시로 확인

크라우드펀딩 투자 후에는 사업진행 상황이나 투자기업의 재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권 발행기업은 매 사업연도 말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산서류를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투자한 기업의 재무실적이 궁금하다면 중개업자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팔고자 할 때에는 거래소에 개설된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상 주식의 호가를 확인하고, 거래상대방과 거래 조건을 논의할 수 있으며, 참여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 KRX Startup Market(<http://ksm.krx.co.kr>) 안내

- **(제도 소개)** KSM안내 → 매매방법, 위험고지 및 참여증권사 확인
- **(호가 조회)** 전종목현황 → 종목별현황

⑤ 벤처기업 등에 투자했다면 소득공제를 신청하세요.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인 기술력 우수기업에 투자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 및 발행기업에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및 벤처기업 인정 요건

소득공제 대상기업	벤처기업 인정 요건
1. 벤처기업 2. 창업 3년 이내 기술성 우수기업 (기술성평가 결과 100점 중 65점 이상)	1. 벤처투자기업 2. 기술평가 보증 · 대출기업 3. 연구개발기업(아래사항 모두 충족) ① R&D 대비 매출액 비중 5~10%이상 (창업 3년 이내 기업 미적용) ②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③ 연간 R&D 비용이 5천만원 이상 ④ 기술성평가 결과 우수(100점 중 65점 이상)

* 관련 사이트: 벤처인(www.venturein.or.kr) - 벤처기업 확인
 엔젤투자지원센터(www.kban.or.kr) - 소득공제절차 확인

소득공제율

구분	소득공제율*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	1,500만원 이하
	1,5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간접투자	10%

* '15년부터 3년간 한시 적용

※ 붙임 : 크라우드펀딩 발행 및 투자현황

- ’16.1.25 이후 현재까지 109개사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증권을 발행하여 172억원의 자금을 조달하였고, 투자자 5,868명이 참여

크라우드펀딩 발행현황

발행기업 수	발행금액	발행건수*
109개사	172억원	115건

* 증권을 2회 이상 발행한 기업이 있어 발행기업보다 발행건수가 많음

크라우드펀딩 투자현황

일반 투자자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		전문 투자자		합계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74억원 (43%)	5,447명 (93%)	11억원 (7%)	174명 (3%)	86억원 (50%)	247명 (4%)	172억원	5,868명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합계액 1억원 이상인 자